

과거오늘의 중대재해	작업공종	재해유발요인			위험등급 (3단계 판단법)			위험성 감소대책	개선조치 담당자	이행확인	
		기인물	재해종류	재해상세	상	중	하			근로자 대표	공사 담당자
추락(*21.11.27)	철골 작업 (철골 부재 인양, 조립)	사다리 (8대 위험요인)	추락 (3대 사고유형)	청탐 철거 완료 후 옥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 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작업을 위해 이동할 경우 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▶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, 아웃트리거 또는 밀림방지판 설치 ▶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			
추락(*21.11.27)	철골 작업 (철골 부재 인양, 조립)	철골구조물 (8대 위험요인)	추락 (3대 사고유형)	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층 파라펫 설치 작업 구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파라펫 설치 작업 중 추락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철골빔 위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,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▶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			
추락(*19.11.27)	방수 작업 (방수면처리, 방수 및 보호물막 등 시공)	달비계 (8대 위험요인)	추락 (3대 사고유형)	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에서 크랙으로 인한 세대 방수 하자 보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작업용 로프가 짧아 달비계와 함께 근로자 추락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달비계 작업 시 로프 길이 등 설치상태 점검 ▶ 안전모, 안전대 및 추락방지대 등 착용 확인 			
추락(*18.11.27)	조적, 미장 및 건축작업 (조적시공)	바닥개구부(자재인양구 등)	추락 (3대 사고유형)	미장 또는 건축작업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로 추락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▶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			
추락(*18.11.27)	수장 작업 (수장시공(석고보드, 도배 등))	이동식비계 (8대 위험요인)	추락 (3대 사고유형)	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안전난간, 아웃트리거 지지, 구름방지장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추락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▶ 이동식비계 부재(주름, 안전난간, 발바퀴, 아웃트리거 등)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▶ 부득이하게 안전난간 일부를 해제해야 할 경우, 관리감독자 등 감시자 배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▶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,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(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) ▶ 작업자의 개인보호구,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			

* 위험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은 위 예시(① 3단계 판단법) 외에도 ②빈도/강도법, ③체크리스트법, ④핵심요인 기술법 등 활용가능
(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(위험성평가의 방법) 제5항 참고)